

발 신 주식회사 KB 국민은행
문서번호 수탁사업부 126
시 행 일 2014. 3. 21.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집합투자기구 공시 담당자
제 목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공시요청**

1. 귀사(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②항 관련입니다.

3. 당행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로서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 철회·변경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아래와 같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4. 귀사(행)는 아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서 귀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 가. 집합투자업자: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 나. 집합투자기구: 한화장기회사채형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다. 투자신탁 설정일: 2008년 10월 28일
- 라. 위반내용: 사채권 투자신용등급 제한(BBB+이상)
 - 현대상선 175-2 (BB+)
 - 사유: 신용등급 강등

붙임: 1. 집합투자업자(한화자산운용)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서 사본1부. 끝.

KB국민은행 수탁사업부장



수신처: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우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수협중앙회, 아이엠투자증권, 외환은행,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이트레이드증권, 하나은행,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NH농협증권, SC제일은행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 철회·변경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감시대상	집합투자업자명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집합투자기구명	한화장기회사채형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집합투자업자 운용지시·행위의 법령등 위반내용		집합투자규약 제17조 1항(사채권 신용등급 BBB+이상 운용) (해당종목: 현대상선 175-2 현재신용등급: BB+ 액면8억)
신탁업자 조치사항	철회요구사항	-
	변경요구사항	-
	시정요구사항	집합투자규약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요구일자 및 이행일자	신탁업자 요구일자	2014년 03월 17일
	집합투자업자 이행일자	2014년 03월 20일 현재 미이행
기타 사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위반